

디지털 결제 및 무서류 무역에 관한 UNCITRAL 콜로키움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법무관 임진우

〈목 차〉

I. 회의 개요

II. 주요내용

1. 디지털 결제에 관한 콜로키움
2. 무서류 무역에 관한 콜로키움
3. 향후 논의 및 평가

I. 회의 개요

디지털 결제 및 무서류 무역에 관한 UNCITRAL 콜로키움이 2026. 1. 19.부터 1. 22.까지 비엔나 국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러시아 등의 제안에 따라 디지털 결제 제도 활성화 및 무서류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콜로키움은 디지털 결제 및 무서류 무역을 주제로 총 6개 패널로 구성되어, 각 패널별로 패널리스트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II. 주요내용

1. 디지털 결제에 관한 콜로키움

1) 개요

UNCITRAL은 1992. 국제신용이체 모델법을 제정하여 국제신용이체에 관한 규범을 제

시하였으나, 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전자화폐 등 새로운 가치이전 수단의 등장으로 동 모델법이 전제한 구조와 범위를 넘어서는 법적 쟁점이 다수 발생하여 2025. 8.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에라리온은 국제 디지털 결제 제도 활성화에 대응하여 이를 뒷받침할 국제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디지털 결제 콜로키움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UNCITRAL은 동 콜로키움에 관하여 1. 19.부터 1. 20.까지 디지털 결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패널 1: 결제시스템 개요

패널 1에서는 전자화폐 등 비물질적 가치이전을 포함한 결제 분야의 국제 동향 및 각국의 국내 법률을 살펴보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제도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비은행인 자금이체업자의 결제업 진입을 허용하였고,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여 자금결제 범위를 확장하였다. 위와 같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은행 및 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하여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민법 제477조를 개정하여 “채권자의 예금 또는 저금 계좌에 대한 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변제는, 채권자가 해당 예금 또는 저금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입금 금액의 지급(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지급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여, UNCITRAL 국제신용이체 모델법¹⁾의 법리와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3) 패널 2: 국제무역협정 결제 관련 규정 논의

패널 2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포함된 결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국경 간 디지털 결제 기준 마련을 위해 참고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각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ASEAN은 구속력 있는 조약·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국가 간 디지털 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위 경험을 바탕으로 2026. 중

1) UNCITRAL 국제신용이체 모델법 제19조 제1항은 수취 은행의 수락시 이체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SEAN 지역 단위 프레임워크(DEFA)를 체결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OECD를 대표하여 참여한 패널리스트는 자금세탁방지 및 사기 탐지 등 디지털 결제와 관련된 범죄 방지를 위해 국경 간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나, 위 데이터 공유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강화기술의 활용을 통한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가 대안으로 논의되나 비용 및 규제 불확실성 문제로 대량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결제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WTO는 WTO 서비스무역협정상 결제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된 각국의 협약, 프레임워크가 전무한 상황임을 설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 9. WTO 무역금융서비스위원회는 세션을 개최하여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및 송금 서비스 촉진을 위한 규제 원칙 수립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칠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를 설명하며 동 협정에서 전자결제 관련 조항을 ‘디지털 결제’장에 규율함으로써 ‘금융상품’장에 규정되어 있는 복잡한 규제를 받지 않게 하여 각국 핀테크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게 설계되었음을 설명하였다.

DEPA 개요
○ [개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의 약자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
○ [주요내용] 협정문은 서문·본문(16개 모듈) 및 부속서(분쟁해결절차 관련)으로 구성되며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체계를 규정
○ [대한민국 가입] '24.5.3. 가입 및 발표

4) 패널 3: 디지털 결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패널 3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결제 활용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쟁점을 발표하였고, 이들 수단이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제기구에서는 국경 간 결제 효율화를 위해 각국 국내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들

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일관된 규제와 거버넌스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각 패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탈중앙화된 새로운 시스템은 전통적인 관할권 적용이 어려우므로, 분쟁 발생 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동 패널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AI가 자율적으로 거래와 결제를 실행하는 에이전틱 AI가 등장하여, 동 AI가 작성한 계약의 책임 귀속 문제와 위 계약에 의한 채무 발생·소멸 시점에 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 패널리스트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환거래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전 예치금 문제²⁾를 해소하고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신흥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5) 패널 4: 국경 간 결제시스템에서의 당사자 권리·의무 및 계약상 급부의무로서의 결제제도

동 패널에서는 국경 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이전의 실패·오류·지연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급시점, 상호운용성 및 신원확인 인프라, 디지털 결제에서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지급시점에 관한 논의에서는 전자지갑이나 블록체인 등 새로운 지급 수단에서 화면상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과, 수취인이 해당 자금을 법적으로 완전히 처분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블록체인 시스템의 ‘확률적 확정성³⁾’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확정성이 높아지지만 거래 성립 확률을 100% 보장하기 어려운 기술적 특성이 있어, 법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단일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일부 패널은 1992. 제정된 UNCITRAL 국제신용이체 모델법과 같이 기술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현대의 복잡한 국경 간 결제 생태계를 반

2) 기존 환거래 은행 시스템에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계좌에 막대한 자금을 사전 예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자금이 실제 정산 시까지 유휴 상태로 묶여 기업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신용 성장을 저해하는 현상

3) 거래가 블록에 포함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률적으로 확정되는 구조

영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경 간 결제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및 위험 전가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법적(私法) 영역이므로,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집행위원회 대표는 유럽의 Instant Payment Regulation⁴⁾ 사례와 같이, 결제 실행 전 수취인 계좌와 예금주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이를 국경 간 거래에도 확장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디지털 결제에서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화폐를 국가가 발행한 통화로 좁게 해석하면 암호화폐 결제에 CISG 적용이 어렵지만,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라는 광의의 경제학적 정의를 채택한다면 기존 협약으로도 디지털 자산 결제 계약을 규율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6) 패널 5: 국경 간 디지털 결제에서의 상호운용성 문제

패널 5에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지만, 높은 기회비용과 일부 국가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이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결제 상호운용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권한마다 상이한 디지털 결제 라이선스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및 데이터 공유 규제의 조각화 또한 통일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의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식별기호 논의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결제의 보안과 국경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의 PSD(지급서비스지침), eIDAS(전자신원확인)와 UNCITRAL 모델법 간의 상호보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경 간 상호 인정이 가능한 디지털 신원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7) 패널 6: 1992. UNCITRAL 국제신용이체모델법 개정 방안

패널 6에서는 UNCITRAL 국제신용이체 모델법(1992)의 개정·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4) EU가 역내 화물운송 과정에서 종이 운송서류 대신 전자 화물정보를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 제도

이루어졌다.

동 패널에서 1992. 모델법은 은행 간의 선형적인 거래 모델을 상정하여 제정되었으나, 현대의 디지털 결제는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 다층적 중개자가 얹힌 네트워크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기존 법리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제기능에 있어서 기존에는 은행의 계좌 간 이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비은행 주체가 핵심적인 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기관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실제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모델법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패널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은행 이체와 달리,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자금이 전송되더라도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한다. 위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 민법개정을 통해 계좌에 대한 지급 효력 완료시기를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이 토큰 전송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토큰화된 화폐는 계좌의 예금액 변동처럼 가치이전의 성격 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의 성격도 가지므로, 위와 같은 성격을 포괄하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 문제들에 대하여 기존 모델법에 디지털 결제에 관한 항목을 단순히 수정·추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 제공자와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실패하거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규칙이 현재 불명확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UNCITRAL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결론적으로 현재 디지털 결제와 관련된 법률 규제는 불완전하며, 이러한 사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규범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기술 발전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모든 패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무서류 무역에 관한 콜로키움

1) 개요

무서류 무역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 전자양도가능기록 모델법(MLETR, 2017),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이용과 국경 간 승인에 관한 모델법(MLIT, 2022) 등이 존재하나 기존 모델법들만으로는 국경 간 무역 전 과정의 디지털화(end-to-end digitalization)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러시아는 2025. 8. 무서류 무역에 관한 콜로키움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사무국은 2025. 1.21.부터 22.까지 무서류 무역에 관한 콜로키움 개최를 결정하였다.

2) 패널 1: 지역 사례 연구

패널 1에서 각 지역 기구들의 무서류 무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영연방에서는 개발도상국, 특히 소규모 국가에서 무서류무역 전환 시 무역 비용을 약 16%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연방은 UNCITRAL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과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통합한 ‘영연방 디지털 무역 모델법’을 제정하였음을 공표하였다. 위 모델법은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전자양도가능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되, 국경 간 상호인정에 관해서는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국에 입법재량을 부여하였다.

ASEAN은 역내 무역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가 간 거래에서는 아세안 단일 창구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민간 차원에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타결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eIDAS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별 사용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요청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왔음을 검증하는 방식 적용하여 신원관리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 패널 2: 조약 등 사례

패널 2에서는 각종 조약 또는 UNCITRAL 전자양도가능기록 모델법(MLETR)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 상업문서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조치가 논의되었다. 국경 간 전자양도성 기록(ETR)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거대한 통일된 법

적 체계를 마련하는 대신 각국이 발행한 ETR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실제 사례로 TRACECA(유럽-코카서스-아시아 운송회랑)가 소개되었는데, 동 회랑에서는 14개국 간 전자문서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초안이 마련되었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허브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위 협약 및 허브 성안을 위한 규제 기관 간 디지털 인증서 자동 수용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4) 패널 3: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상호인정

패널 3에서는 전자 문서 및 데이터의 국경 간 승인을 위한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관련 법률의 역할을 검토하고, EU eFTI 규정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신원관리 제도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경 간 디지털 신원과 신뢰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관련 거버넌스의 부재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패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각 패널들은 UNCITRAL 신원 관리 및 신뢰서비스 모델법을 개정하거나 각국이 도입하여 법률 문서 상호인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사례공유가 이루어졌는데, 유라시아 지역의 완전 개방형 신뢰서비스 상호 인정 실패 사례와 EU 규제(eIDAS), 캐나다의 분산형 상호인정 모델이 소개되었으며, 지역별 시스템 간 신뢰서비스 현황이 공유되었다.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 패널은 서로 다른 규제 환경을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로서 신뢰서비스 제공 업체 목록 작성, 신뢰서비스 상호인정을 위한 제3기관 활용 등과 같은 방식이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패널리스트로부터 제안되었다.

또한 OECD는 2023. 권고안을 통해 사용자 중심 설계, 거버넌스 강화, 국경 간 신뢰 구축을 디지털 ID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G20 및 G7 등 국제 포럼과 협력하여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법적·기술적 표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5) 패널 4: 무서류 무역과 법적 과제

패널 4에서는 국경 간 무서류 무역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과 관련한 UN 지역 경제위원회 등 지역기구들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공유되었다.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위원회는 전세계 국경 간 무서류 무역 구현율은 평균 17%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크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경 간 무서류 무역 촉진 프레임워크를 2021. 2. 발효한 점을 강조하였다.

참고: CPTA 개요
- (개요)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Cross-border Paperless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에 전자문서의 국경 간 활용과 상호운용성을 촉진하여 무서류 무역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비구속적 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 (주요 가입국) 중국, 러시아 등 - (한국 가입 현황) '22.11.28. 가입

국경 간 데이터 교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닌 법적 상호운용성 문제이므로, 많은 국가들의 MLETR(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 채택 및 CTPA 참여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UNESCAP 대표는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UNESCAP 대표는 대한민국은 모든 무역 관련 데이터를 디지털 처리하여 무서류 무역을 구현했다고 평가하였다.

참고: UNESCAP 한국 언급 부분(영문)
- The Republic of Korea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aperless trade system, enabling the full digitization and processing of all trade-related data and documents. - Having transitioned to advanced digital platforms as early as the 2000s, Korea stands at the forefront of technological solutions for paperless trade, consistently driving domestic development and acceleration.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유럽 내 무서류 무역 구현율 83%를 달성했으나 국경 간 무서류 무역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최근 UNECE/CEFACT에서 채택된 정책 권고 50호⁵⁾를 통해 운송 회랑의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동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UN/CEFACT 무역 촉진 및 전자 비즈니스를 위한 유엔 센터 표준을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에서의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위 표준을 유럽연합의

5) UNECE 산하 UN/CEFACT가 개발한 권고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시장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교환 표준 및 규제 프레임워크 등 디지털 연결성(Soft Infrastructure) 강화에 중점을 둔 국제 표준 지침

eFTI 등 주요 규제와 연계하기 위한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였다.

영국 무역통상부는 2023년 전자무역문서법(ETDA) 시행으로 전자상업문서를 종이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였고, 싱가포르 및 태국과의 전자화된 무역을 시범 도입하고 있음을 밝혔다. 위 시범 도입을 통해 서류 처리 시간 89% 단축 및 비용 15~25% 절감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상대국에 유사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통일된 규범 마련을 위한 글로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패널 5: 무서류 무역과 법률 과제 국가별 사례

패널 5에서는 무서류 무역 촉진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과 관련한 한국, 싱가포르 등 국가별 사례가 공유되었다. 한국의 사례에 관하여 국제법무정책과장이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UNCITRAL 원칙(기술 중립성 등)을 반영하여 2023.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국경 간 전자서명 인정을 당사자(경제 주체) 간 합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2023. CPTA에 가입하고, 중국·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과 국경 간 전자 문서 교환 시범 사업(Pilot Projects)을 운영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오스트리아는 '27.7.부터 당국이 전자 화물 운송 정보(eFTI)를 의무 수용함에 따라 시스템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타코그래프(운행기록) 데이터와 eFTI 데이터를 통합하여 카보타지 위반 등을 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전자어음법과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상법 제862조에 전자선하증권(e-BL) 규정을 마련하여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인 KTNET과 KL-NET을 통해 전자상하증권 등록 시스템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중앙 등록 시스템 가입자 간에만 유통이 가능하고, 비가입자는 활용할 수 없어 국제적 통용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은 외국 발행 e-BL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이는 외국에서 발행된 e-BL을 차별하지 말라는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MLETR) 제19조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더불어, 운송인이 등록기관에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는 최신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반의 운송 실무와 호환되지 않아 신속한 유통에 방해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상법 제862조를 개정하여 발행 방식을 중앙 등록 시스템에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발행된 모든 e-BL의 효력을 인정하는 기술 중립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선하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창고증권 등 다양한 전자양도성기록을 포괄하는 통합 법제

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MLETR과 최근 UNCITRAL 제6작업반의 '유통 가능한 화물증권에 관한 유엔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무서류 무역 확산의 실패 원인을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폐쇄적인 플랫폼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플랫폼에 의존적인 현행 제도가 아닌 법적 효력(MLETR)에 따른 상호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오픈소스 공공 플랫폼인 '트레이드 트러스트(TradeTrust)'를 개발하여 누구나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폐쇄적 플랫폼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MLETR의 내용을 상업적 언어로 번역한 모델 계약 조항을 배포하여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향후 논의 및 평가

1) 향후 논의

UNCITRAL 사무국은 동 콜로키움의 논의 결과를 '26.6.22.부터 7.10.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59차 UNCITRAL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 관찰 및 평가

디지털 결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디지털 결제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UNCITRAL에서도 1992년에 제정된 국제신용이전 모델법(MLICT)이 최신 가상자산 기반 송금 구조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 송금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우리 법제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면밀히 추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서류 무역에 있어 한국은 2007년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지정 등록기관' 중심의 폐쇄적 모델이 국제적 상호운용성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수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MLETR)의 기술 중립성 원칙을 반영하여 특정 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통합 법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트렌드를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